옥천군 공고 제2018 - 1056호

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8년 12월 10일

옥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2. 개정이유

○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에 대한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, 수당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여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동 조례를 개정함.

3. 주요골자

○「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된 것을 반영하여 회기수당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삭제(안 제10조 제1항 단서)

○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상향 조정(별표)

○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

4. 의견제출

○「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(안)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재무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(043)730-3226, FAX:(043)731-2487

○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○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 등

5. 붙임

○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○ 의견서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위촉기간”을 “위촉기간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제10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0조에 따른”으로, “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〕

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 지급 기준(제13조 관련)

구 분	액 수
수 당	수당: 150,000원/1일
여 비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상 부군수 상당액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선임방법 및 자격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군의회에서 선임한다. ② ~ ⑤ (생 략)	제3조(선임방법 및 자격) ① 제2조에 따른 -----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조(위촉기간) ① (생 략) ② 위원의 위촉기간 2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제4조(위촉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위촉기간은 ----------. ----------.
제10조(수당의 지급)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군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② (생 략)	제10조(수당의 지급) ① 제4조에 따른 ----------. <단서 삭제> 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수당의 계산)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 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. 다만,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	제11조(수당의 계산) ① 제10조에 따른 ---------- 제4조제2항에 따른 ----------. ----------

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.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에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. ② ---------- ---------- 제12조에 따른 - ---------- ---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례명 :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　　견